

##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7. 7. 3

제안자: 김인수 의원 외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자연환경보전법이 분법되어 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과 「습지보전법」이 제정되고, 「자연환경보전법」도 개정됨에 따라 「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」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
-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, 현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함

#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.
- 부칙 안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
단,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##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3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.
- 부칙 안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
단,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32조(과태료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b>(신설)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.</p>	<p><b>제32조(과태료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경과조치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단,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</p>